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17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7
2.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요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0.

다.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 ② (생략)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의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교내 전담기구는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심의를 진행함.¹⁾

사안의 성격에 따라, ①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소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필요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조치²⁾를 결정하도록 하고, ②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요건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³⁾는 “객관적 요건”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가 없음을 서면 확인받아야 함.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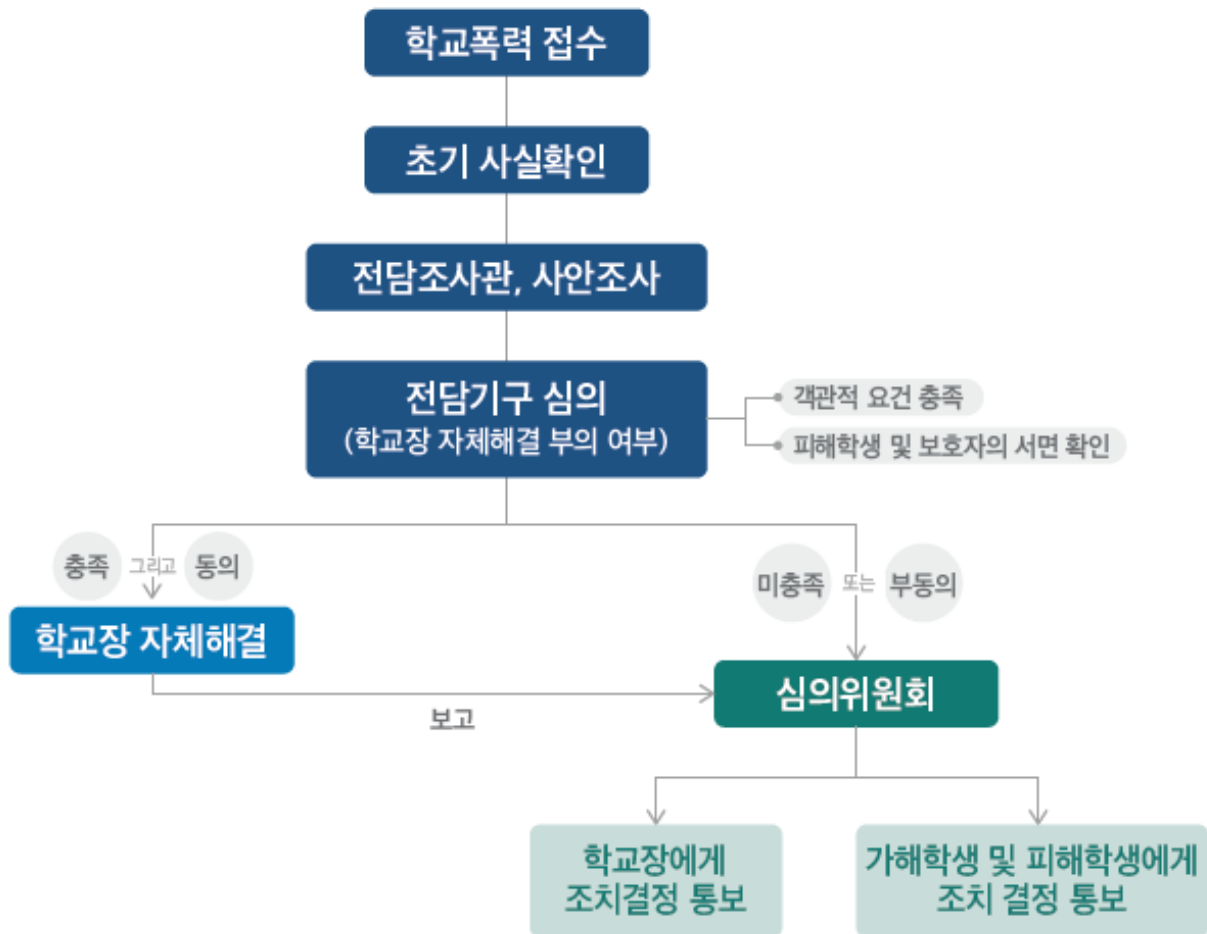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달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생략)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



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바,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함⁵⁾.

개정안은 자체해결이 가능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사안에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사안처리 절차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적인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까지 외부 개입을 통해 해결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들 간 관계 회복을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화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감소하여 보다 심각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를 규정한 취지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해 절차가 진행

5)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4, 64p

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도 함께 확보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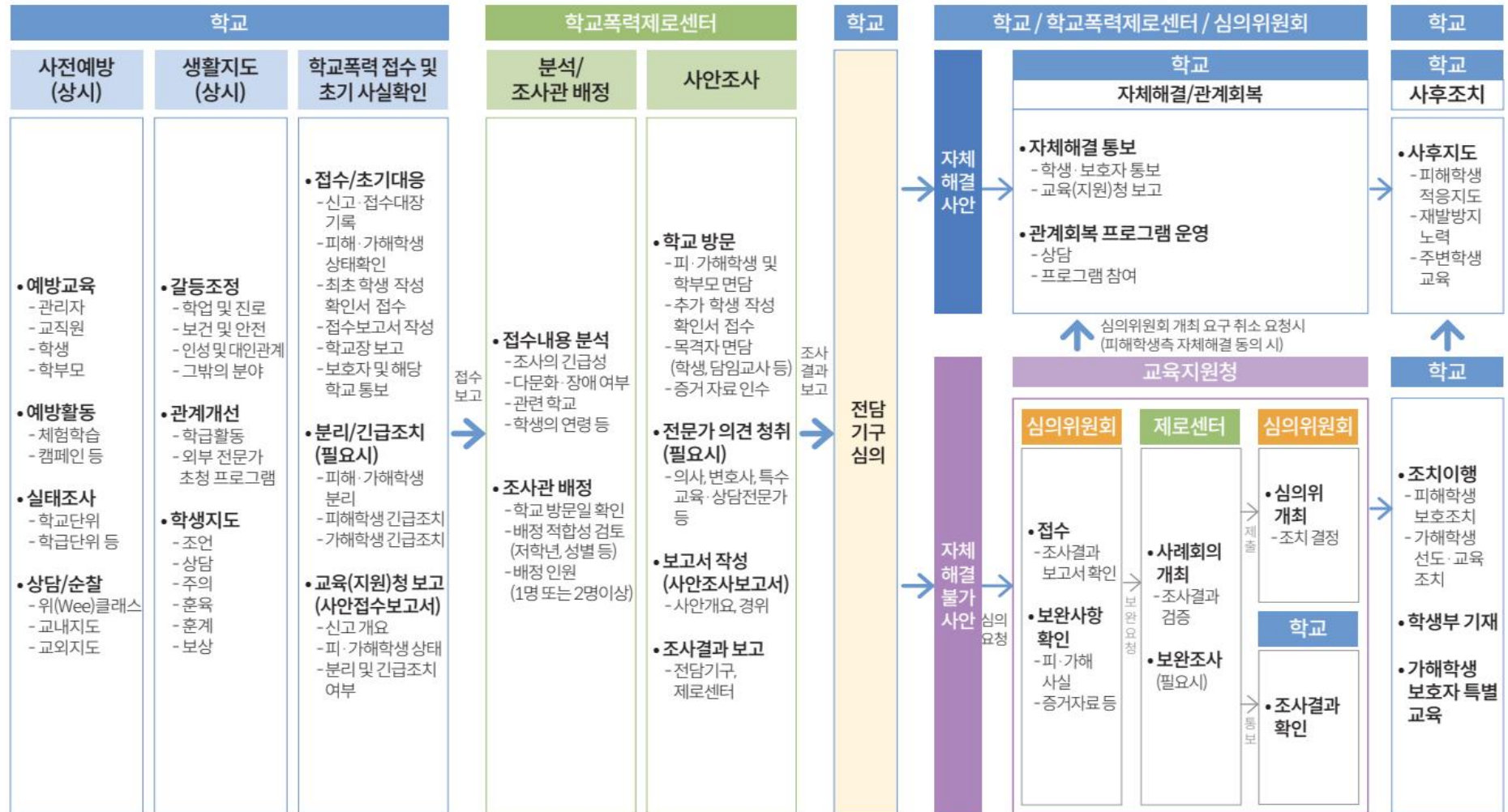
○ 교육부: 이견없음 -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대면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학교에서 활용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서’ 등을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서면 안내할 수도 있음
○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할 경우, 학교에서 고지 절차를 누락하게 되면 심의 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학교와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이 예상됨(세종) -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 등을 고려한 처리 방식의 자율성을 부여한 현행 방식에서 고지의 의무를 절차에 포함할 경우,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 발생 등의 어려움이 우려되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대구) -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가 시기적으로 부적절. 자체 해결에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는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학교의 장에게 사실상 무용한 절차 안내를 하게 함으로써 학교에게 부담을 주게 됨(서울) -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무조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학교에 부담만 증대할 뿐 효용이 없다고 생각함.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에만 학교에서 판단하여 권유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지 필요(전남)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1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자료: 교육부

1. 관계회복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계회복의 개념

-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회복의 목적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회복을 조력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한다.

 운영 대상 및 방법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법률 제13조의2제3항)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사전 개별면담 :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한다.

6)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4~65p에서 발췌

- 관계회복 프로그램(직접대면 및 소통) :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하도록 조력한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

☑ 관계회복의 운영 주체

-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참고 : 관계회복 진행 시 유의사항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학교 및 교사는 사전에 가급적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서로 소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안내한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학교 및 일상생활과 또래와의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안내한다.
- 피해학생에 대하여 모든 단계 시작 시 현재 마음과 생각, 2차 피해(재발 및 보복 등),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학생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푸른나무재단]